

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4. . .
발 의 자	이정희 의원 외 21인

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(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4. . .

발의자: 이정희 · 강승수 · 김근한 · 김낙관
김민성 · 김영길 · 김영태 · 김원섭
김재우 · 김정도 · 박교상 · 박세채
소진혁 · 신용하 · 이명희 · 이상호
이지연 · 장미경 · 장세구 · 정지원
추은희 · 허민근 의원(22인)

1. 제안이유

구미시의 자연·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가치 창업가로 육성·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, 지원사업, 위탁(안 제4조~제6조)
- 위원회 설치 및 운영, 포상(안 제7조~제9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9조

2)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11조

나. 부서검토: 일자리경제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기타: 없음

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의 자연·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가치 창업가로 육성·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로컬크리에이터”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자연적·문화적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
2.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
3.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

방안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·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
2.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
3.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
4.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
5.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·학·연·관 협력 사업
6.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) 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시 산하 출자·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
2.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
3.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구미시의회 의원
2.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의 장 또는 직원
3.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위탁기관의 장 또는 직원
4.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, 유관기관, 단체에 대해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

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소상공인 창업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
2.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·자문 및 교육
3. 자금조달, 인력, 판로 및 사업장 입지(立地)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4.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·자문 및 교육
2.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·인력·판매·수출 등의 지원
3.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,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
4.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
5.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

6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□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1. 소상공인 창업 지원
2.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
- 3.~8. (생략)

제11조(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
2.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사업
3. 경영 컨설팅 및 금융컨설팅 지원
4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
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일자리경제과

조 례 명

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□ 검토 사항

○ 근거 법령
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9조
-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11조

□ 주요 사항

- 가.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지원계획의 수립, 지원사업, 위탁, 예산지원(안 제4조~제6조)
- 다. 위원회 설치 및 운영, 포상(안 제7조~제9조)

□ 검토 결과

-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은 유·무형의 지역자원을 자신만의 사업모델에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관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제5조 2항
~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른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대행~
→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가 대행~
: 조례 개정 당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명칭 미정이었으나, 현재

‘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’로 명칭을 정하여 개소식(“24.6.4)을 앞두고 있음.

- ‘소상공인 지원센터’ 는 現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이전 명칭으로 포털 검색 시 소상공인진흥공단 구미센터가 검색되어 명칭혼동 우려
- ‘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’ 로 명명하여 명칭속에 각종 기관에 흩어져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, 연결해 주는 플랫폼기능 내포 및 각종 지원사업 추진

○ 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~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

→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협의

: 1~4항의 내용은 심의사항보다 협의사항으로 볼 수 있음

○ 제7조 1.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삭제),

2~4. → 1~3.(1항 삭제 후, 항 번호 변경)

: 중복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삭제 요청

○ 제8조 1. 구미시의원 → 1. 구미시의회 의원

○ 제8조 3.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직원

→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의 장 또는 직원

: 제5조 2항의 사유와 동일

○ 제8조 4. 위탁기관의 장 또는 직원

→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

위탁기관의 장 또는 직원

□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

- 기대효과 :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및 설치 근거 마련으로 창업 및 기존 소상공인의 성장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

○ 소요예산 : 2024년 기편성된 예산

※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*

- 기존 예산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
* 「2023년도 법제업무편람」 p.50 비용추계서 첨부기준 참조